

해명자료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태희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민표 서기관 (☎750-2511) ulabba@kcc.go.kr

“ 한국은 中-러와 ‘규제 필요’ ” [동아일보], “한국도 인터넷 빅브라더? 방통위, ITU 정부통제권 강화 규칙 개정안에 서명” [전자신문] 관련 방통위 해명 자료

‘12.12.17.(월) 동아일보의 『미-유럽 “인터넷규제 반대”, 한국은 中-러와 “규제 필요”』, 전자신문 『한국도 ‘인터넷 빅브라더? 방통위, ITU 정부 통제권 강화 규칙’ 개정안 서명』 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 동서 냉전시대에 ‘서방세계’로 분류되던 국가들이 모두 반대했다.(찬성한 국가와 서명거부한 국가로 이분된 자료 제시) (동아일보)
- 한국은 개정된 ITRs에 최종 서명했다. 인터넷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 방통위가 ITU 정부통제권 강화 규칙 개정안에 서명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신문)

□ 방통위 입장

- 이번에 개정된 ITRs 내용에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터넷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음 (별첨: 인터넷관련 ITRs 개정내용)

- 규정에 포함된 네트워크 보안·안전과 스팸의 경우에도 ‘회원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을 뿐,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기구 공조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트래픽관리(망중립성) 조항은 논의과정에서 유보되었음
- 이처럼 최초 논의 시점에는 인터넷관련 규정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음
- o 이번 WCIT 회의에서 참여한 151개국 중 서명한 국가는 89개국, 서명에 반대한 국가는 20여개 국가이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본국과 상의 후 추후 서명여부를 ITU에 통보하겠다고 밝힘
- 151개국 중 서명한 89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를 서명반대 국가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임
- o 한국의 일관적인 입장은, 정보보호·스팸 등 네트워크 침해 등과 관련된 인터넷 이슈는 ITU, OECD, 사이버스페이스, ICANN 등 모든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
- ITU 폐막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ITU 회원국에게 전달한 바 있음. 끝.

※ 별첨

〈인터넷 관련 ITRs 개정 내용〉

① 1조 1항: **These Regulations do not address the content related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본 규칙은 통신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련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② 1조 1항 : **These Regulations also contain provisions applicable to those operating agencies, authorized or recognized by a Member State, to establish, operated and engage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the public, hereinafter referred as "authorized operating agencies".** 본 규칙은 또한 공중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개설, 관여 및 운영하기 위해 회원국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운용기관에 적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며, 이후에는 허가운용기관(AOA)로 칭한다.

③ **Article 5A Security and Robustness of networks (네트워크 보안 및 안전)**
41B Member States shall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ndeavour to ensure the security and robustness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use thereof and avoidance of technical harm thereto, as well as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fered to the public. 회원국은 대중에게 제공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용과 기술 피해 방지 및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독립적 혹은 협력적으로 국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Unsolicited bulk electronic communications (원하지 않은 대량의 전자통신)**
41C Member States should endeavour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propagation of unsolicited bulk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minimize its impact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in that sense. 회원국은 원치 않은 대량의 전자통신 확산을 방지하고 동 이슈가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